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기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0년 04월 06일 이주웅 의원이 발의하고, 2020년 0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

1. 제안이유

평창군 관내 어린이의 즐겁고 자유로운 놀이문화를 통하여 따뜻한 공동체를 회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목적 및 정의 (안 제1~2조)

나.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군수의 노력의무 규정(안 제3조)

다. 놀이공간의 기능(안 제4조)

라. 놀이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안 제5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한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읍면별 어린이놀이기구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안 제3조에서는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군수의 노력의무 규정
 - 안 제4조에서는 놀이공간의 기능
 - 안 제5조에서는 놀이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지원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 우리군을 비롯하여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놀이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조례”의 전국적 입법례는 4군데(광주광역시 서구, 울릉군, 대구광역시, 공주시)지자체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